

2023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편람

2023. 1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목 차

1. '23년 평가 개요	1
1. 목적	1
2. 추진방침	1
3. 평가대상 및 주요 일정	1
4. '23년 평가지표 개선 요약	3
2. '23년 평가 세부 추진 계획	6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2. 주요 일정 및 내용	6
3. 평가 결과 보고 및 활용	8
3. '23년 평가지표	10
1. A 운영체계	13
2. B 업무성과	55

1. '23년 평가 개요

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준 향상 유도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2 추 진 방 침

- 평가 실시 공고일 기준으로 지정 1년 이상 경과한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231개소) 평가
- 평가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 평가반 구성·운영 및 워크숍 개최
-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 실무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기관의 경쟁력 향상 및 발주자의 우수기관 선택권 보장

3 평가 대상 및 주요 일정

- 대상 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31개소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부산청	광주청
합계	231	21	88	29	20	31	42
법인	159	13	53	22	16	23	32
지도사	72	8	35	7	4	8	10

- 대상 기간: '22. 10. 1.부터 '23. 9. 30.까지 수행한 업무 실적

○ 추진 절차



○ 주요 평가 일정

추진 내용	일 정	비 고
- 평가 실무위원회(1차) 개최 - 평가 계획 수립, 필요 사항 등 검토	'23. 10. 4.	울산
- 평가 운영위원회(1차) 개최 - 평가 계획 및 필요 사항 등 심의·의결	'23. 10. 10.	서울
평가 실시 계획 공고	'23. 10. 17.	공단 홈페이지 및 K2B
평가 설명회(비대면, 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10월 중순(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K2B
- 평가자 워크숍 - 평가자간 편차 해소 및 세부 기준 공유	'23. 11. 1. ~ 2.	대전
평가 실시	'23. 11. 6 ~ 11. 30	피 평가 기관 231개소
- 평가 중간회의 - 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 공유 및 편차 해소	'23. 11. 10. 예정	울산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안내 · 접수	12월 초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K2B
- 평가 실무위원회(2차) 개최 - 평가 결과 집계 및 이의 신청 사항 검토	12월 중 예정	울산
- 평가 운영위원회(2차) 개최 - 최종 평가 결과 정리	12월 중 예정	서울
평가 등급 결정 및 최종 평가 결과 공표	'24년 1월 예정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

4

'23년 평가 지표 개선 요약

○ 항목 조정: 11개 항목(평가 기준 개선 및 명확화)

○ 평가 기준 개선 항목

분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 점	지도사	비고
합 계					1,000		
A 운 영 체 계 (400)	소 계				400		
	A.1	운영관리체계 (90)	1.1 운영규정 수립의 적정성(평가개선)		30(-5)	○	개선
			1.2 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40(-5)	○	개선
			1.3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20(-5)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200)	2.1 지도요원 추가 확보 노력		60(-20)		
			2.2 고급인력 확보 실적		30		개선
			2.3 고용안정(정규직화) 노력		20		
			2.4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40		
			2.5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30	○	
			2.6 지도요원의 역량강화 활동 노력		20	○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100)	3.1 장비의 유지·관리 적정성		30	○	
			3.2 장비사용 숙지상태		30	○	
			3.3 추가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노력		40	○	개선
			3.4 홈페이지 등 온라인 서비스 구축		+10	○	
	A.4	종합기술지원(10)	4.1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10	○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170~+20)	5.1 포상 실적		+20	○	
			5.2 업무정지 처분 실적		-120	○	
			5.3 시정조치·경고처분 실적		-50	○	
B 업 무 성 과 (600)	소 계				600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30)	1.1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		40		개선
			1.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30	○	개선
			1.3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서명 및 전달의 적정성		20	○	
			1.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의 적정성		100	○	
			1.5 향후 공정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의 적정성		50	○	
			1.6 기술자료 제공의 적정성		30	○	
			1.7 교육지원 횟수의 적정성		20	○	
			1.8 장비 활용의 적정성		40	○	
			1.9 기술지도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		-50	○	
	B.2	재해감소(150)	2.1 사고사망재해 발생빈도 감소 성과		120	○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120)	2.2 업무상 사고재해를 감소 성과		30	○	개선
			3.1 기술지도사업장 만족도		40	○	개선
			3.2 안전활동 우수사례		40	○	
	B.4	정부정책반영 노력도 (-160~+100)	3.3 기술지도 우수사례		40	○	
			4.1 산재 은폐 및 보고지연		-100	○	
			4.2 감독기관 신고연계		+40	○	개선
			4.3 재정지원사업 연계		+40	○	개선
			4.4 기술지도 실적 전산입력 오류		-60~+20	○	개선
	4.5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 노력		+20	○			

※지표별 배점은 변동 없음

○ 개선 항목 세부 내역

순번	평가지표	개선 사유	개선(안)
1	(A.1.1)운영규정 수립의 적정성	필수항목이 4가지 임에도 불구하고 3가지 누락된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 개선 필요	평가기준에 “필수사항 중 2~3가지가 누락된 경우 10점”으로 반영
2	(A.1.2)연간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2년 신규지정기관도 23년에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미수립하여도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개선 필요	평가방법에 “22년 신규지정기관은 기본점수 부여(10점)” 삭제
3	(A.2.2)고급인력 확보 실적	지표의 취지는 고급인력 확보를 통해 기술지도 수준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3,4호인력으로 신고하여도 1,2호 자격, 경력이 있으면 1,2호인력 으로 평가 필요	3, 4호 인력이 1, 2호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경우 3, 4호 인력에서 제외하고 1, 2호 인력으로 평가
4	(A.3.3)추가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노력	드론 등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에 대해서도 지도인원 대비 50%이상 보유하여야 추가 장비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필요	평가기준에 “※ 스마트건설안전 장비”는 50% 미만 보유·활용하더라도 추가장비로 인정” 문구 추가 *기술지도 시 활용 가능한 드론, 지능형 CCTV, 붕괴, 변위 위험 정보 장비, 이동형 유해가스 측정 경보시스템, 이동형 화재감지 센서, 출입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 안전관리 시스템
5	(B.1.1)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의 적정성	3, 4호 인력이 기술지도 한 공사 금액 40억원 이상인 현장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체 인력에 대한 평가 필요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신규퇴사 직원 포함 법정 신고 인력 현황 파악 → “평가 대상 기간 중 전체 신고 인력 현황 파악”으로 문구 수정
6	(B.1.2)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고용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은 제외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평가필요	필수사항 중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항목은 삭제하고, 추가 항목에 반영 (가점 10점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점 및 기 제시된 추가 항목 5점으로 분배)
7	(B.2.2)업무상 사고재해율 감소 성과	평가기준은 업무상 사고재해율 감소성과에 대해 평가, 문구 수정 필요	재해율 → 사고재해율 문구수정
		편람의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개선필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공표된 업무상재해율 대비 기술지도 사업장의 업무상재해율을 평가 → 평가대상 기관의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기술지도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을 평가

순번	평가지표	개선 사유	개선(안)
7	(B.2.2)업무상 사고재해율 감소 성과	편람의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개선필요	“※ '22년 1억~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근로자수 0000명, 재해자수 0000명으로 재해율 0.00%를 기준” 삭제
8	(B.3.1)기술지도 사업장 만족도	부적정 문구(오타) 삭제 필요	평가 기준 중 “안전관리전문 기관” 문구 삭제
		판단기준 ③민원은 모든 민원이 아니라 기술지도 관련 민원으로 한정하여 개선 필요	“③ 기술지도 관련 민원이 ~ 경우에 한함” 으로 개선
9	(B.4.2)감독기관 신고연계	'23년 고용노동부 방침으로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 불량 건설현장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로 20억원 미만 현장은 공단으로 신고·연계함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실적도 인정 필요	“평가대상 기간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 받아 평가”로 문구 수정 “공단에 신고한 실적은 공사 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장에 한함” 문구 추가 반영
10	(B.4.3)재정지원 사업 연계	해당 지표는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 현장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연계 노력도를 평가하는 취지이나, 기관에서는 연계건수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평가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개선 필요 ※중소기업지원실에 의뢰하여 재정지원 실적을 제공받아 평가하던 방식을 기관에서 연계건수를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	평가방법에 “기관의 재정지원 사업 연계 현황을 제출받아 공단자료와 비교하여 평가하고, 기관에서 누락한 연계 현황은 평가 미반영” 문구 삽입
11	(B.4.4)기술지도 실적 전산 입력 오류	임의산재번호를 정식산재번호로 미변경의 제외 사유로 “기술지도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조건 입력오류에서 제외처리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단, 정식산재번호로 변경할 수 없는 사유의 증빙서류를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후 승인한 경우에는 입력오류에서 제외처리”로 문구 수정

2. '23년 평가 세부 추진 계획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정: (1차)'23. 10. 4. / (2차)12월 중
 - 목적: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심의 · 검토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정: (1차)'23. 10. 10. / (2차)12월 중
 - 목적: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심의 · 의결

2 주요 일정 및 내용

- 평가 실시 공고
 - 공 고 일: '23. 10. 17.(화)
 - 공고내용: 평가 기준, 이의신청 절차 · 방법 등
 - 공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및 K2B, 기관 별 공문 발송
- 평가 설명회
 - 평가 참고 자료(편람) 및 지표 설명 영상 자료 배포로 대체
 - 대상 기관별 편람 발송(우편) 및 영상 자료 게시(공단 홈페이지)
 - 평가지표 관련 상담반을 운영하여 평가지표 관련 사항 응대
 - ※ 상담반: 본부(이기완 차장), 평가센터(김대용 차장)
- 평가 방법 및 항목
 - 평가 방법: 평가 기준에 따른 5등급(S~D) 절대평가(1,000점 만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900점 이상	800 ~ 899점	700 ~ 799점	600 ~ 699점	600점 미만

· 평가 항목: 2개 분야 36개 문항(운영체계: 400점, 업무성과: 600점)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문항 수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문항 수
A 운영 체계	총 계		400	17	B 업무 성과	총 계		600	19
	A.1	운영관리체계	90	3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총실성	330	9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200	6		B.2	재해감소 성과	150	2
	A.3	시설·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100	4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120	3
	A.4	종합기술지원	10	1		B.4	정부 정책 반영 노력도	-160 ~ +120	5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170 ~ +20	3					

○ 평가 실시

· 평가기간: '23. 11. 6. ~ 11. 30.

- 평가 대상 기관별 일정 협의 후 확정
- 평가 거부 등 비협조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 보고 및 페널티 부여

○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평가 매뉴얼에 따라 방문 평가

- 자체평가보고서, 만족도 조사 대상 등의 자료 제출 요구
※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은 '0점' 처리
- K2B 전산시스템에 평가 결과 입력
- 평가받은 전체 평가 결과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 실무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 소 요 일: 기관 당 1일

· 평가항목: 2개 분야(운영체계 400점, 업무성과 600점)

- 평가 점수는 가점을 포함해 최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 항목은 평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검토 후 최종 확정됨

3

평가 결과 보고 및 활용

○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 평가결과 통보

- 통보일자: 12월 초 기관 별 공문 통보 예정
- 통보방법: 평가 점수 확인 방법 공문 통보, 이의 신청 절차 안내

· 이의 신청

-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 평가 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 접수(12월 초 예정)

· 이의 신청 내용 검토 및 재평가

- 재 평가: 이의 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한함
※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 내부 검토(실무위원회 등)를 통해 재평가 여부 결정
- 결과통보: 검토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 평가 기관으로 통보

○ 평가 실무위원회(2차)

· 일 정: 12월 중

· 주요내용

- 방문 평가 종료에 따른 평가 결과 검토 및 이의 신청 사항 검토
- 평가 운영위원회 안건 사항 검토
- 차기 평가 시 반영 필요 사항 검토

○ 평가 운영위원회(2차)

· 일 정: 12월 중

· 주요내용

- 평가 등급 검토 및 확정
- 이의 신청 안건 검토 및 확정
- 차기 평가 시 평가지표 개선 사항 검토 및 확정

○ 최종 평가 결과 보고, 공개 및 활용

- 최종 평가 결과 보고: 12월 중 고용노동부 보고(예정)
- 종합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 결과 공개: ('24년 1월 예정)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 통해 공표
 -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평가 등급 게재
 - 평가 제외 기관에 대해 사유 기재 및 명단 공개
- 평가 결과 우수 기관(S등급)은 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불량 기관(C, D등급)은 감독 강화 등의 페널티 부여

3. '23년 평가지표

평가 항목별 배점표

(지도사 기관은 ○ 항목만 평가)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 점	지도사	비고
합 계				1,000		
A 운영체계 (400)	소 계			400		
	A.1	운영관리체계 (90)	1.1 운영규정 수립의 적정성(평가개선)	30(-5)	○	
			1.2 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40(-5)	○	
			1.3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20(-5)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200)	2.1 지도요원 추가 확보 노력	60(-20)		
			2.2 고급인력 확보 실적	30		
			2.3 고용안정(정규직화) 노력	20		
			2.4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40		
			2.5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30	○	
			2.6 지도요원의 역량강화 활동 노력	20	○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100)	3.1 장비의 유지·관리 적정성	30	○	
			3.2 장비사용 숙지상태	30	○	
			3.3 추가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노력	40	○	
			3.4 홈페이지 등 온라인 서비스 구축	+10	○	
	A.4	종합기술지원(10)	4.1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10	○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170~+20)	5.1 포상 실적	+20	○	
			5.2 업무정지 처분 실적	-120	○	
			5.3 시정조치·경고처분 실적	-50	○	
B 업무성과 (600)	소 계			600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30)	1.1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	40		
			1.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30	○	
			1.3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서명 및 전달의 적정성	20	○	
			1.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의 적정성	100	○	
			1.5 향후 공정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의 적정성	50	○	
			1.6 기술자료 제공의 적정성	30	○	
			1.7 교육지원 횟수의 적정성	20	○	
			1.8 장비 활용의 적정성	40	○	
			1.9 기술지도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	-50	○	
	B.2	재해감소(150)	2.1 사고사망재해 발생빈도 감소 성과	120	○	
			2.2 업무상 재해를 감소 성과	30	○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120)	3.1 기술지도사업장 만족도	40	○	
			3.2 안전활동 우수사례	40	○	
			3.3 기술지도 우수사례	40	○	
	B.4	정부정책반영 노력도 (-160~+100)	4.1 산재 은폐 및 보고지연	-100	○	
			4.2 감독기관 신고연계	+40	○	
			4.3 재정지원사업 연계	+40	○	
			4.4 기술지도 실적 전산입력 오류	-60~+20	○	
			4.5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 노력	+20	○	

※ 평가 기준 개선 항목은 진하게 표시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

☐ 문서화 여부 평가 기준

- 결재(수기)를 득한 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가 기입된 문서만 인정

평 가 기 준	감점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문서상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책임자 결재를 득함	감점 없음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하나 등록정보(문서번호, 등록일자, 책임자 결재) 일부 누락	-2점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문서 등록정보(문서번호, 등록일자, 책임자 결재) 모두 누락	-3점
㉣ 기록물 관리기준이 없으며, 문서화하지 않음	-5점

※ 자체 문서관리 규정(지침)이 있을 시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지표 항목별 문서화 합산 점수는 최저점은 0점으로 평가

- (예시)항목 득점이 3점이고 문서화 점수가 -5점 평가 시 항목 합계 점수는 “0”점으로 평가

☐ 평가 대상 업무 수행 기간: 2022. 10. 1. ~ 2023. 9. 30.(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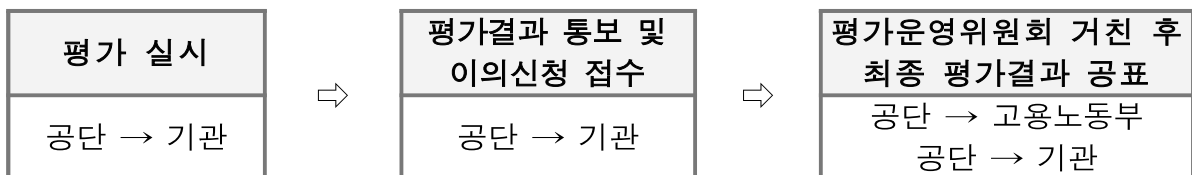
☐ 평가 산식에 따른 계산 값 또는 득점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

☐ 평가 항목(세부 분야) 및 분야별 득점은 최하 0점, 최고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종 평가 결과 확정시기

- 이의신청 안내를 위해 통보된 평가 점수는 최종 결과가 아님
- 최종 등급은 이의신청 등 모든 절차 완료 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평가결과 확정 및 공표】



☐ 지도사 기관에 대한 평가

- 지도사 기관은 “○”표기된 항목만 평가한 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지도사 기관 평가 제외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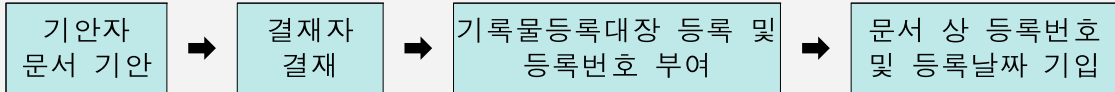
·A.1.3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20점) ·A.2.1 지도요원 추가 확보 노력(60점) ·A.2.2 고급인력 확보 실적(30점)	·A.2.3 고용안정(정규직화) 노력(20점) ·A.2.4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40점) ·B.1.1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40점)
---	--

기록물등록대장 등록 및 문서상 표기방법

□ 기록물등록대장 문서 등록방법

① (생산문서)결재자의 결재가 끝난 후 등록 및 (생산)등록번호 부여

※ 생산문서: 외부 발송문서 및 내부결재 문서



② (접수문서)접수와 동시에 등록 및 (접수)등록번호 부여 후 결재자 결재



□ 기록물등록대장 작성양식 및 방법

- 기록물등록대장 작성 양식의 8가지(①~⑧) 내용은 필수 기입 사항임
- 필수기입 사항 외에도 기관 필요에 따라 내용 추가 가능

【기록물등록대장 작성양식】

등록 구분	생산(접수) 등록일자	생산(접수) 등록번호	제 목	결재권자	기안자 (업무담당자)	수신자 (발신자)	기록물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록물등록대장 작성방법】

- ① 등록구분: 생산 / 발송 / 접수 중 선택하여 기입
- ② 생산(접수)등록일자: 생산 또는 접수 기록물의 등록 일자 기입(예: 2023. 1. 1.)
- ③ 생산(접수)등록번호: 처리부서(기관)명(코드)와 연도별 일련번호 기입
- ⑤ 제 목: 해당 문서의 제목 기입
- ⑥ 결재권자: 결재권자 기입
- ⑦ 기안자(업무담당자): (생산·발송문서)기안자 성명, (접수문서)업무담당자 성명 기입
- ⑧ 수신자(발신자): (생산)내부결재로 기입, (발송)해당 문서 수신 기관 기입, (접수)해당 문서 발송 기관 기입
- ⑨ 기록물철: 해당 기록물이 편철되는 기록물철명

□ 접수인 활용

- 기관 기안문 양식에 등록번호, 등록날짜, 결재란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 그대로 사용
- 기관 기안문 양식에 등록번호, 등록날짜, 결재란이 없는 경우 “접수인” 제작 활용

생산(접수)등록번호	○○○사업부(기관) - 001		
생산(접수)등록일자	20 . 1. 1.		
결 재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서명)	(서명)	(서명) (결재일자)

세부평가 A.1.1	운영규정(매뉴얼) 수립의 적정성(배점: 30점, 감점: -5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점(평가결과 점수 - 감점)	
운영규정 (매뉴얼) 수립의 적정성	필수 사항 모두 반영	☐ 30
	필수 사항 중 1가지 누락	☐ 20
	필수 사항 중 2 ~ 3가지 누락	☐ 10
	필수 사항 모두 미반영·미 수립한 경우	☐ 0
	문서화 여부(감점: -5점)	☐ -5 ☐ -3 ☐ -2
평가취지	운영규정(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능력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 고유의 운영규정(매뉴얼) 수립, 업무절차의 적정성, 최신성, 공유 수준 평가 - 운영규정(매뉴얼)의 제·개정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치 여부 확인 ☐ 평가 기준 ○ 기관의 업무 규정·절차서·지침 등에 아래 필수 사항 반영 및 실행 여부 확인 - 작성항목은 만족하나 그 내용이나 실행수준이 부실한 경우 누락으로 판단 - 구성원에게 공표 또는 회람하지 않은 경우 평가 결과 한 단계 하향 ○ 필수 사항 ① 기술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기술지도 지침 등) - 기술지도 업무 절차 구분 및 절차별 업무 수행 방법(보고서 작성, 수행내역 등록 등), 법정 지도 기준 반영 여부, 기술지도 세부 지침 ②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장비운용지침 등) - 장비 등록 및 관리 기준(이력카드, 점검 및 관리 방법 등), 검·교정, 불용처리, 관리 책임자 등 제시 여부 ③ 기록물(문서) 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문서관리지침) - 기관 문서등록(생산/접수/발송) 방법 및 기록물등록대장 관리 여부 - 내부 품의(결재) 기준 및 실행 여부 ④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개정 사항에 대한 등록 및 대장 관리 ※ 위 필수 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외 필요한 사항은 기관 필요에 따라 작성	
확인사항	☐ 운영규정(매뉴얼, 절차서, 지침) 등	

1 평가 취지

경영방침 및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상 필요한 규정/절차/기준을 확립·이행하고, 법률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가 요구되는 곳에서 효과적인 관리절차를 적용하며 관리대책의 적용이 필요한 활동의 계획을 수립시켜 이행하기 위함

2 평가 방법

- 1단계: 기관의 운영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서화 되어 있는가?
- 2단계: 운영 매뉴얼 중 필수 사항 4가지가 반영되어 있는가?
- 3단계: 모든 규정/매뉴얼은 최신화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 4단계: 관련 규정/매뉴얼은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표 및 회람하고 있는가?
 ⇒ 위의 4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기관의 운영방침과 규정/매뉴얼/지침의 차이가 무엇인가?
- (A)이전까지의 평가는 운영방침과 사업계획, 규정/매뉴얼/지침이 혼재되어 있어 규정에 사업계획 내용이 반영되는 등 기관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음
- (A)따라서 규정/매뉴얼/지침 등 개념은 매뉴얼/절차서/지침서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운 영 체 계

A.1 운영관리체계

(90점)

세부평가 A.1.2		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배점: 40점, 감점: -5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점(평가결과 점수 - 감점)		
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필수 사항 모두 반영		☐ 40
	필수 사항 중 1가지 누락		☐ 30
	필수 사항 중 2가지 누락		☐ 20
	필수 사항 중 3가지 이상 누락		☐ 10
	필수 사항 모두 미반영·미 수립한 경우		☐ 0
	문서화 여부(감점: -5점)		☐ -5 ☐ -3 ☐ -2
평가취지			
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기관 운영 내실화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사업계획 수립에 요구되는 필수 사항 반영 및 실행 여부를 평가			
☐ 평가 기준 ○ 필수 사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여부를 확인하여 부실한 경우 누락으로 판단 ○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별* 적정성을 확인하여 미흡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전년도 실적 분석 ⇒ 문제점 파악 ⇒ 목표 설정 ⇒ 세부계획 수립 ⇒ 실행 ○ 사업계획을 구성원에게 공표 또는 회람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한 단계 하향 ○ 필수 사항			
① 기관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업무상 재해율, 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수립여부) ② 기술지도 사업장의 재해통계 분석(최근 3년 또는 전년대비 재해분석) ③ 직원 운용계획(지도요원 활용 및 사업장 분배 계획 수립 여부) ④ 직원 교육훈련계획(내·외부 교육계획 수립 여부) ⑤ 장비 활용계획(현장별 장비 활용계획 수립 여부) ⑥ 기술자료 제작 및 배포계획 ⑦ 사업장 교육지원 계획 ⑧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⑨ 당해연도 사업평가 계획(환류계획 수립 여부)			
※ 위 필수 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외 필요한 사항은 기관 필요에 따라 작성			
확인사항			
☐ 연간 사업계획서 및 실행 증빙 자료 등			

1 평가 취지

대상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및 동 현장이 법적 요구 이상의 안전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기술지도 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평가 방법

- 1단계: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2단계: 사업계획 중 필수 사항 9가지가 반영되어 있는가?
- 3단계: 사업계획 실효성·내실성이 있는가?
 - ⇒ 현장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계획 선정 여부
 - ⇒ 전년도 사업계획 평가, 경영자 검토, 내부 심사자료 등 반영 여부
 - ⇒ 세부 추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 여부
 - ⇒ 사업계획의 세부 목표, 추진 내용 등 구성 내용 작성 여부
- 4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관련 문서를 문서화하는가?
 - ⇒ 위의 4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사업계획의 세부 추진 계획은 어떤 형태로 작성하는지?
- (A)조직에서 업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함.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연중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P→D→C→A에 따라 환류활동을 실시해야 함
- (A)세부 추진 계획은 목적, 목표, 추진방침, 추진절차, 세부 추진 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운 영 체 계

A.1 운영관리체계

(90점)

세부평가 A.1.3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배점: 20점, 감점: -5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점(평가결과 점수 - 감점)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필수 사항 모두 반영	☐ 20
	필수 사항 중 1가지 누락	☐ 15
	필수 사항 중 2가지 누락	☐ 10
	필수 사항 모두 미반영	☐ 0
	문서화 여부(감점: -5점)	☐ -5 ☐ -3 ☐ -2
평가취지	조직 및 개인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의 업무관리체계(조직도), 업무분장 문서, 현장 확인을 통해 필수 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 ☐ 평가 기준 ○ 필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 해당사항 누락으로 판단 ○ 기관 인력 중 1명 이상 선정하여 면담하고 업무수행이 업무분장과 상이할 경우 평가 결과 한 단계 하향 ○ 업무분장을 구성원에게 공표 또는 회람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한 단계 하향 ○ 필수 사항 ① 조직도 및 업무분장의 문서화 여부(전담 조직 및 인력을 명확히 구분) ② 성명, 직급, 부서, 담당업무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총괄책임자, 분야별 담당자, 장비 담당자, 대관업무 등 ③ 인력 변동 시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업무분장을 변경(지도요원의 경우 변경등록일) ※ 예: '22. 1. 20. 변동 → '22. 2. 19.까지 변경	
※ 위 필수 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외 필요한 사항은 기관 필요에 따라 작성		
확인사항	☐ 조직도, 업무분장, 개인별 업무수행 기록 등	

1 평가 취지

조직 단위별 목적과 기능, 담당 업무, 책임 및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서별 업무 수행과 부서 간 협조 및 조정을 원활하게 하여 대상 현장의 기술지도 수준 제고와 기관 사업목적 달성의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함

2 평가 방법

- 1단계: 조직도, 업무분장을 수립하고 있는가?
- 2단계: 업무분장 중 필수 사항 3가지가 반영되어 있는가?
- 3단계: 업무분장은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표 또는 회람되고 있는가?
- 4단계: 업무분장 관련 문서(변경)를 문서화하는가?
 - ⇒ 위의 4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수행 인력 1명을 선정, 면담하여 업무분장이 상이할 시 한 단계 하향 평가
 - ⇒ 업무분장을 구성원에 공표 또는 회람하지 않은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 ⇒ 지도사 기관은 평가 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3 질의회시

- (Q)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타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을 동시에 지정·등록받을 경우 수행 인력에 대해 조직도 및 업무분장을 혼합해 구성해도 되는지?
- (A)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받은 경우 각 유형별로 각 신고 인력에 따라 조직도, 업무분장을 구성해야 함
- (A)각 유형별 신고 인력을 혼재하여 구성할 수 없으며 혼재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세부평가 A.2.1 지도요원 추가 확보 노력(배점: 60점 , 감점: -2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지도요원 추가확보 노력	지도요원 1명당 월 평균 기술지도 비율에 따른 점수	점
	감점: K2B 입력 실적과 기관 관리 실적이 다를 경우	(감점: 점)

평가취지

추가 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기술지도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K2B 실적 기준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월간 법정 한도 대비 실제 기술지도 실시 비율과 비전담인력*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비전담인력: 월 평균 기술지도 횟수가 30회 미만인 지도요원

□ 평가 기준

○ 평가대상 인력

- 평가 대상 기간: '22. 10. 1. ~ '23. 9. 30.(12개월)
- 대상인력: 아래 적용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지도요원을 대상으로 하되, 법정 최소 인원 이상으로 평가(실적이 많은 순으로 선정)

※ 인력 적용 기준

- ① 고용노동부 지정인력인 자(사무업무자 등 제외)
- ② 평가 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업무수행실적이 확인되는 자(신규 채용 및 퇴사 인력 포함)
- ③ 상근(월~금, 1일 8시간 근무)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단,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시간단축제 등 관련 문서가 있을 시 인정)
- ④ 업무분장에 포함되어 있을 것

○ 평가점수표

기술지도 비율 비전담인력 비율	95% 초과 100% 이하	90% 초과 95% 이하	85% 초과 90% 이하	80% 초과 85% 이하	80% 이하
20% 미만	20	30	40	50	60
20% 이상 40% 미만	10	20	30	40	50
40% 이상	5	10	20	30	40

- 월 평균 기술지도 비율: 월 평균 기술지도 횟수 및 법정 최대 한도 대비 비율 산출

$$\text{산식: } \frac{\text{평가대상인력의 K2B등록기술지도 횟수}}{\sum(\text{인력} \times \text{근무 개월}) \times 80\text{회}} \times 100$$

- 인력 및 기술지도 횟수: 인력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인력 및 실적은 포함하되, 비전담인력과 그 수행실적은 제외
- 근무 개월: 평가대상 지도요원별 실제 근무 개월 합산(소수점 첫째자리)

다음 장 계속 ►

○ 비전담인력 비율

- 월 평균 기술지도 횟수 30회 미만 지도요원 비율 산출

$$\text{산식: } \frac{\text{월 평균 기술지도 횟수 30회 미만 지도요원 수}}{\text{인력 적용 기준을 만족하는 전체 지도요원 수}} \times 100$$

○ K2B 입력 실적과 기관 자체 관리 실적이 다를 경우 20점 감점(-20점)

○ 평가 시 다음 사항이 확인된 경우 본 지표 점수를 “0”점 처리

- 1일 또는 월 최대 기술지도 한도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 K2B 전산 입력 누락 또는 변경 등록으로 법정 기술지도 한도 횟수를 조절한 경우

확인사항

☐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현황, 재직증명서, 기술지도 실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참고자료

지도요원 추가 확보 노력_점수 산정 방법 예시

① 전체 기술지도 횟수: 6,344회

- 지도요원별 기술지도 현황(6개월 이상 근무, 법정 등록 및 전담 지도요원만 평가에 반영)

연번	성명	근무 개월	기술지도 횟수	월평균 기술지도	반영 여부
1	안OO	12개월	864회	72회	반영
2	전OO	7.5개월	180회	24회	비전담인력(제외)
3	보OO	4개월	280회	70회	평가제외
4	건OO	12개월	900회	75회	반영
5	공OO	12개월	950회	79회	반영
6	단OO	12개월	800회	66회	반영
7	건OO	12개월	750회	62회	반영
8	설OO	10개월	700회	70회	반영
9	평OO	6.5개월	420회	64회	반영
10	가OO	8개월	500회	62회	반영

② 총 근무 개월(반영 인력에 한함): 84.5개월

③ 반영 제외 기술지도 횟수: 460회

■ 지도요원 1명당 월 평균 기술지도 비율

$$\text{1명당 월평균 기술지도 비율} = \frac{(\text{① 전체 기술지도 횟수}) - (\text{③ 반영 제외 기술지도 횟수})}{(\text{② 총 근무 개월}) \times 80\text{회}} \times 100$$

$$\frac{6,344\text{회} - 460\text{회}}{84.5\text{월} \times 80\text{회/월}} \times 100 = \frac{5,884\text{회}}{6,760\text{회}} \times 100 = 87.0\%$$

■ 비전담인력 비율(6개월 미만 근무 지도요원 1명(3번) 제외)

$$\frac{\text{월 평균 기술지도 횟수 30회 미만 지도요원 1명}}{\text{6개월 이상 근무한 등록된 기술지도 요원 9명}} \times 100 = 11.1\%$$

■ 평가 점수: 주어진 표에서 찾으면 40점

세부평가 A.2.2		고급인력 확보 실적(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고급인력 확보 실적	지도요원 중 고급인력 보유 수준에 따라 점수 부여 [고급 지도인력 비율 점수 + (박사학위 소지자) × 5점] 단, 최대점수는 30점으로 제한					_____점
평가취지						
고급 지도인력 확보를 통한 기술지도 수준 향상을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의 인력현황을 파악하여 지도요원 중 고급 지도인력의 비율을 평가 - 기술지도 분야별 전체 지도요원 중 인력기준 1, 2호를 합한 인력 수와 3, 4호를 합한 인력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업안전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는 경우 인당 5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총점 30점으로 제한						
☐ 평가 기준 ○ 평가대상 기간 중 최대 등록인원 및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지도인력 비율	300% 초과	200% 이상 30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00% 미만	
점 수	0	5	10	20	30	
○ 지도인력 비율 $\frac{\text{지도인력기준3,4호를합한인력수}}{\text{지도인력기준1,2호를합한인력수}} \times 100$ - 산안법 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시행령 별표19) 참조 ※ 3, 4호 인력이라도 1, 2호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하였을 시에는 3, 4호 인력에서 제외하고 1, 2호 인력으로 평가 ○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범위 - 산업안전 분야: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안전 -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확인사항						
☐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자격사항 관련서류 등						

1 평가 취지

산안법 시행령 별표 19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기준 중 경험과 기술력이 높은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높은 기술지도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함

2 평가 방법

- 1단계: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신규·퇴사 직원 포함 법정 신고 인력 현황 파악
- 2단계: 박사 또는 1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수행 인력 파악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반드시 수행 인력이 법정 신고 인력이어야 함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 ⇒ 지도사 기관은 평가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3 질의회시

- (Q)박사학위의 인정 범위가 있는지?
- (A)고급인력 인정 기준 중 박사학위 보유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에 한해 인정됨

4

인력 기준(산안법 시행령 별표19)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 1)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전기·전기
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건축·
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전기·전기
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건축·
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세부평가 A.2.3 고용안정(정규직화) 노력(배점: 2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고용안정 (정규직화) 노력	정규직 비율 100%	☐ 20
	정규직 비율 80% 이상 100% 미만	☐ 15
	정규직 비율 60% 이상 80% 미만	☐ 10
	정규직 비율 40% 이상 60% 미만	☐ 5
	정규직 비율 40% 미만	☐ 0
평가취지 지도요원의 고용 안정화를 통한 기관의 수준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방법 ○ 필수인력 및 추가인력의 개인별 근로계약을 제출받아 평가 ○ 전체 지도인력(A.2.1 기준) 대비 정규직 비율을 산출하여 고용안정 노력도 평가 ☐ 평가 산식 $\text{정규직비율} = \frac{\text{정규직지도요원수}}{\text{전체지도요원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 여부를 평가 -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법정 등록인력은 상근일 것(월~금 1일 8시간 근무기준). 다만, 유연근무제, 시간단축제 등의 관련 문서가 있을 시 인정		
확인사항 ☐ 고용계약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현황,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수행 인력의 고용 안정성 유도를 위함

2 평가 방법

- 1단계: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신규·퇴사 직원 포함 법정 신고 인력 현황 파악
- 2단계: 고용계약서 및 임금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 여부 확인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반드시 수행 인력이 법정 신고 인력이어야 함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 ⇒ 지도사 기관은 평가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3 질의회시

- (Q)고용계약서에 ‘정규직’ 이라 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지?
- (A)정규직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함
 -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부평가 A.2.4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배점: 4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100%	☐ 40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80% 이상 100% 미만	☐ 30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60% 이상 80% 미만	☐ 20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40% 이상 60% 미만	☐ 10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40% 미만	☐ 5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가취지		
지도요원의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대상 기간 중 1/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신규직원 또는 퇴직인력 포함 - 1년 미만 수행 인력은 전문화교육 인정대상을 근속기간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 평가 산식 $\text{전문화교육이수율} = \frac{\text{내부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지도요원수}}{\text{전체 지도요원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내부 전문화교육 인정대상 ① 해당 기관의 장이 매년 종사자 전체 혹은 직종·업무별로 수립한 내부 직무교육 ② 지도요원별 연 12시간 기준 실시한 내부 전문화 교육 ※ 교육 이수시간에 따라 이수율(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반영 ○ 내부 전문화교육 제외대상 ①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되는 교육(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② 4대 법정 교육(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장애인 인식 개선) ※ 교육 실시일에 기술지도 횟수를 확인하여 적정 교육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실적은 제외 <예시> 기술지도 1회를 2시간으로 가정하고 교육 2시간 실시 기술지도 3회 ⇨ 해당요원 교육 인정 교육시간 4시간 실시 기술지도 3회 ⇨ 해당요원 교육 불인정		
확인사항		
☐ 연간 교육·훈련 계획수립 문서, 기록물등록대장,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수행 인력에 대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전문화교육 실시 노력도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신규·퇴사 직원 포함 법정 신고 인력 현황 파악
- 2단계: 수행 인력별 평가 대상 기간 내부 전문화교육 실적 확인
- 3단계: 교육 실시일에 기술지도 횟수를 확인하여 적정 교육 시간을 확보했는지 여부 확인
(예. 기술지도 1회를 2시간으로 가정, 교육 2시간 실시+기술지도 3회 실시: 해당 요원 교육 인정, 교육 4시간 실시+기술지도 3회 실시: 해당 요원 교육 불인정)
⇒ 위의 3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반드시 수행 인력이 법정 신고 인력이어야 함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지도사 기관은 평가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3 질의회시

- (Q)내부 전문화교육의 이수시간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 (A)내부 전문화교육은 수행 인력별(1인당) 12시간 이수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됨

세부평가 A.2.5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100%	☐ 30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80% 이상 100% 미만	☐ 25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60% 이상 80% 미만	☐ 20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40% 이상 60% 미만	☐ 15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40% 미만	☐ 10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 실적에 없는 경우	☐ 0
평가취지 지도요원의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대상 기간 중 1/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신규직원 또는 퇴직인력 포함 - 1년 미만 수행 인력은 전문화교육 인정대상을 근속기간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 평가 산식 $\text{전문화교육이수율} = \frac{\text{외부전문화교육이수한지도인력수}}{\text{전체지도인력수}} \times 100$ ※ 지도요원 1인당 1회에 한함 ☐ 평가 기준 ○ 외부 전문화교육 인정대상 ①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8시간 이상 집체 외부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16시간 이상 온라인 외부 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② 직무 수행에 보조적인 교육(인문, 사회, CS 교육, 강사육성, 통계, 기업진단 등)을 이수한 경우 ※ 외부 교육 기관의 강사가 방문하여 교육 후 수료증 발급한 경우 인정 ○ 외부 전문화교육 제외대상 ①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매년 종사자 전체 혹은 직종·업무별로 수립한 내부직무교육 ② 4대 법정 교육(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장애인 인식 개선) ③ 기술자격(기술사 등)에 따른 보수교육 등 법정교육 ④ 공단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교육 확인사항 ☐ 연간 교육·훈련 계획수립 문서, 기록물등록대장, 교육이수증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수행 인력에 대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화교육 실시 노력도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신규·퇴사 직원 포함 법정 신고 인력 현황 파악
- 2단계: 수행 인력별 평가 대상 기간 외부 전문화교육 실적 확인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반드시 수행 인력이 법정 신고 인력이어야 함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외부 전문화교육의 이수시간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 외부 전문화교육은 수행 인력별(1인당) 8시간 이수를 기준(집합교육의 경우 8시간, 온라인교육의 경우 16시간)으로 하며, 이수증이 확인되어야 인정됨
- (Q)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도 외부 전문화교육으로 인정되는지?
- (A)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화교육 대상에서는 제외됨
- (Q)A기관이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되는지?
- (A)A기관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인정됨. 다만, 집합교육의 경우 이수증, 출석부 등 증빙이 되어야 함

세부평가 A.2.6	지도요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노력(배점: 2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지도요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노력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100% 이상	☐ 20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80% 이상 100% 미만	☐ 15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60% 이상 80% 미만	☐ 10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60% 미만	☐ 5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가취지		
적극적인 전문역량강화 활동 참여 유도를 통한 기술지도 수준의 질적 제고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 활동 실적을 평가 - 평가 대상 기간에 1/2이상 고용 내역이 확인되는 직원(신규직원 또는 퇴직인력 포함)		
☐ 평가 산식 $\text{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 \frac{\text{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 지도인력수}}{\text{전체 지도인력수}} \times 100$ ※ 지도요원 1인당 1회에 한함		
☐ 평가 기준 ○ 전문성 향상 활동 인정범위		
① 산업안전·보건 분야* 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경우(온라인 포함)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산업안전보건의 달) 세미나에 참석한 경우(온라인 포함) ③ 산업안전·보건 분야* 대학교, 대학원 등의 학위 과정을 취득, 이수 또는 수강하는 경우 ④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금전적 지원 또는 시간적 배려 등이 증빙된 경우에 한함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범위 - 산업안전 분야: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안전 -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확인사항		
☐ 자격증 관련 서류, 세미나 참석증, 학위과정 증빙서류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역량강화 활동 참여도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신규·퇴사 직원 포함 법정 신고 인력 현황 파악
- 2단계: 수행 인력별 평가 대상 기간 역량강화 활동 참여 실적 확인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반드시 수행 인력이 법정 신고 인력이어야 함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학회 세미나의 경우에만 역량강화 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세미나 이수 시간 기준이 있는지?
- (A)학회 세미나 이외 기술지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세미나는 모두 인정되며, 시간에 대한 별도의 이수 기준은 없음
- (Q)소방청에서 실시하는 CPR교육 또는 체험교육도 역량강화 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A)외부 교육 관련 실적은 모두 외부 전문화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며, 역량강화 활동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 (Q)온라인 세미나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 (A)온라인 세미나의 경우 이수증 또는 결과보고서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인정됨

세부평가 A.3.1 장비의 유지·관리 적정성(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장비의 유지·관리 적정성	검·교정 모두 실시	☐ 30
	검·교정 1대 ~ 2대 누락	☐ 20
	검·교정 3대 ~ 4대 누락	☐ 10
	검·교정 5대 이상 누락	☐ 5
	보유 장비의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0
평가취지		
보유장비 검·교정 실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측정장비 및 기술지도의 신뢰성 향상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장비운용지침을 통해 검·교정 주기 설정의 적정성 및 누락여부 확인 ○ 장비별 지침에 따른 검·교정 이행여부(검·교정 성적서) 확인		
☐ 평가 기준 ○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검·교정 “누락”으로 평가 ○ 장비 유지·관리 관련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누락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① 장비운용지침(관리방법, 보유 장비 현황, 검·교정 대상 및 주기가 명시되어 있음) 수립 ② 검·교정 주기는 3년 기준(센서장비*는 2년)으로 설정(장비 또는 센서 교체 인정) *센서장비: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조도계 ③ 장비별 이력카드 보유 및 수리내역 기록여부 확인(추가 장비 포함) ④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 확인		
○ 검·교정 대상 장비 - 가스농도 측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조도계(검·교정 주기: 2년) -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검·교정 주기: 3년) - 검전기(검·교정 비 대상)		
확인사항		
☐ 장비운용 규정(매뉴얼), 장비이력카드, 검·교정 실적(성적서) 등		

1 평가 취지

보유 장비의 운용 효율화를 위해 기관의 보유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및 실행 여부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기관의 장비 유지관리 지침과 기관의 필수 및 추가 장비 현황 파악
- 2단계: 보유 장비별 이력카드 및 검·교정 성적서 확인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지침과 실행 여부가 일치해야 함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법정 장비로 산소농도측정기를 3대 보유하고 있을 경우 1대만 검·교정을 실시해도 되는지?
- (A)보유 중인 법정 장비는 검·교정 계획에 따라 모두 검·교정을 실시해야 함
- (Q)신규 장비의 경우 검·교정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 (A)신규 장비의 경우 구매 시점을 검·교정 받은 것으로 같음하며, 이후에는 검·교정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함
- (Q)법정 장비 이외 추가 장비도 검·교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 (A)추가 장비의 경우에도 검·교정을 실시해야 함

장비 유지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장비운용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기준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여 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0000 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관리조직) 운용총괄자는 장비의 명확한 관리책임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제5조(장비운용회의) ① 000의 장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장비의 구매 및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비구매·관리 및 운용사항에 대한 회의(이하 “장비운용회의”이라 한다)를 소집, 협의하여야 한다.

.

.

.

제3장 업무 수행절차

제7조(구입계획 수립 및 시행) 000의 장은 장비구입계획 수립 및 시행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장비 구매계획 수립 시 장비품목 및 수량은 별표0의 장비보유기준, 타 기술부서와의 중복구매 및 공동 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5

교정·시험 측정 대상 장비 및 주기

교정·시험 측정 대상 장비 및 주기

연번	대상 장비 명	주기 (개월)	비고
1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24	필수
2	산소농도측정기	24	필수
3	접지저항측정기	36	필수
4	절연저항측정기	36	필수
5	조도계	24	필수
6	검전기(저압용·고압용·특고압용)	비대상	필수 (전기공사)
7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36	
8	클램프미터	36	
8	소음측정기	24	
10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24	
11	정전기전위측정기	24	
12	멀티테스터	24	
13	토크게이지	36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24	

※ 교정·시험 대상 제외조건: 교정 대상 장비 중 단순 기능 및 측정 보조기능을 하는 장비는 운용책임자가 판단하여 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운용책임자가 판단하여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평가 A.3.2 장비 사용 숙지상태(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장비 사용 숙지상태	장비 사용 숙지율 100%	☐ 30
	숙지율 80% 이상 100% 미만	☐ 20
	숙지율 60% 이상 80% 미만	☐ 10
	숙지율 60% 미만	☐ 5
	장비 전체에 대해 숙지하지 않은 경우	☐ 0
평가취지		
보유 장비 사용 방법 및 교정 방법에 대한 지도요원의 이해도 향상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지도요원 1명을 선정하여, 법정장비 사용방법 및 교정방법 숙지 정도 평가 ※ 지도사 기관은 지도인력에 한해 실시		
☐ 평가 산식 $\text{장비숙지율} = \frac{\text{숙지 완료한 법정 장비 수}}{\text{분야별 법정 장비 수 (5~7대)}} \times 100$		
☐ 평가 기준 ○ 사용법과 교정법을 모두 숙지한 경우 숙지상태로 인정 ○ 법정장비 기준 - 건설공사 분야: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가스분석기), 조도계,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5종)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 분야: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가스 분석기), 고압경보기(직교류 고전압계), 검전기, 조도계,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7종) ○ 장비별 사용방법과 교정방법은 해당 장비의 매뉴얼을 따름 ○ 평가 장비의 매뉴얼 미보유시에는 한 단계 하향 평가 - 매뉴얼에는 측정 방법, 측정 장소, 측정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기관 자체 매뉴얼이 아닌 제조사 사용설명서 등 제공받은 매뉴얼 불인정		
확인사항		
☐ 장비 사용매뉴얼, 평가자 사용 및 교정방법 숙지 결과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수행 인력에 대한 보유 장비의 사용 방법 및 교정 방법, 기술지도 현장에서의 활용 방법 등 이해도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기관의 장비 사용자 매뉴얼 보유 여부 확인
- 2단계: 지도요원 1명을 선정하여 숙지상태 평가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장비 매뉴얼 미 보유 시 한 단계 하향 평가
 - ⇒ 사용 방법 및 교정 방법을 모두 숙지하였는지 여부 확인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보유 장비 사용자 매뉴얼은 장비 구매 시 사용자 설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 (A)장비 구매 시 제공되는 사용자 설명서는 불인정되며, 별도로 지침 또는 매뉴얼(측정 방법, 측정 기준, 측정 장소, 교정방법 명시)을 작성하여 보유해야 함

4 장비 사용 방법 및 검·교정 방법 숙지 상태 평가

1, 2. 가스농도측정기 및 산소농도측정기



(예시)

·적정공기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 ₂)	18% ~ 23.5%
탄산가스(CO ₂)	1.5% 미만
황화수소(H ₂ S)	10ppm 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3. 접지저항측정기



(예시)

·접지저항 값 판정기준

접지대상	접지저항 기준(폐지)	KEC 접지방식
(특)고압설비	1종: 접지저항 10Ω	·계통접지: TN, TT, IT 계통 ·보호접지: 등전위분당 등 ·피뢰시스템접지
600V 이하	특3종: 접지저항 10Ω	
400V 이하	3종: 접지저항 100Ω	
변압기	2종: $\frac{150V}{1차측지락전류(A)}$ [최대 5Ω]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명칭 변경

·접지종별 및 접지저항 기준이 폐지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적용됨

4. 절연저항측정기



(예시)

·절연저항 측정 기준

전로의 사용 전압(V)	DC 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2차 전압이 ac 5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5. 조도계



(예시)

·작업장 조도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작업 구분	기 준
초정밀 작업	750Lux 이상
정밀 작업	300lux 이상
보통 작업	150Lux 이상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작업 환경에 따른 조도 기준(KS A 3011)

단위: Lux

작업 환경	최소	표준	최대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15	20	30
임시 단순사업장	30	40	60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사업장	60	100	150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150	200	300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300	400	600

6. 검전기



(예시)

·저압, 고압 및 특고압 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압	기준	
저압	직류	1.5kV 이하
	교류	1kV 이하
고압	직류	1.5kV 초과 7vK 이하
	교류	1kV 초과 7kV 이하
특고압	7kV 초과	

세부평가 A.3.3			추가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노력(배점: 4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추가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노력	추가 시설·장비 6종 이상 확보 및 활용		☐	40
	추가 시설·장비 4~5종 확보 및 활용		☐	30
	추가 시설·장비 2~3종 확보 및 활용		☐	20
	추가 시설·장비 1종 확보 및 활용		☐	10
	추가 시설·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	0
평가취지				
다양한 장비 활용을 통한 기술지도의 수준 향상 및 신뢰성 제고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추가 장비의 기준 부합 여부 판단 후 실물, 구매실적(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평가				
☐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상 타 분야 또는 기타 장비 보유 시 추가 장비로 인정 ○ 지도인원 대비 50% 이상 보유 및 활용 실적(결과보고서)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스마트건설안전장비*는 지도인원 대비 50% 미만 보유·활용하더라도 추가장비로 인정 *기술지도 시 활용 가능한 드론, 지능형 CCTV, 붕괴·변위 위험 정보 장비, 이동형 유해가스 측정 경보시스템, 이동형 화재감지센서, 출입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 안전관리 시스템 ○ 임대장비도 포함하며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정(임대계약서 및 실물 확인) ○ 위의 장비 중 해당 기관 등록에 필요한 법정장비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이 가능한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보유 시 “가스농도측정기 1대”, “산소 농도측정기 1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인정 - 단,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 인정 시 “복합가스농도측정기”는 1대(1종)로 인정 ※ 추가 시설·장비 예시 (시설)사업장이 이용 가능한 교육장, 자료실, 전시장 등 (장비)레이저거리측정기, 디지털각도계, 클램프미터, 시청각교육장비, 드론, VR 등 ○ 법정 장비를 전체 보유 대수 기준 대비 1.4배 이상 보유 시 한 단계 상향 평가 ○ 법정 장비를 보유대수 기준 대비 장비가 부족한 경우 “0점” 처리 ○ 추가 장비 불인정 기준 ① 타 부서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임대장비인 경우 임대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임대 기간이 평가 대상 기간의 1/2 이상 포함) ③ 구매이력(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④ 단순 측정용 장비(자 등)의 경우 ⑤ 산안법 및 타법에 따라 지정 등록된 기관 중 해당분야 필수장비인 경우				
※ 동일한 기능을 가진 2개 이상의 추가 장비는 1종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확인사항				
☐ 장비운용 규정(매뉴얼), 장비이력카드, 검·교정 실적(성적서) 등				

1 평가 취지

다양한 장비 활용을 위해 기관의 법정 장비 외 추가 장비의 확보 및 활용도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기관의 추가 장비 보유 및 활용 여부 확인
- 2단계: 추가 장비 불인정 대상 확인(공용 장비, 단순 측정 장비 등)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추가 장비 실물 및 활용 실적이 있는지(결과보고서) 여부 확인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추가 장비의 인정 범위 기준은 무엇인지?
- (A)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정 장비 외의 장비(자 등 단순 측정용 장비 제외)를 말하며 주로 타 분야(안전관리전문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등 법정 장비)의 장비를 추가 장비로 권고하고 있음

4 타 분야 장비 기준

- 안전관리전문기관

- 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저압용 · 고압용 · 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 안전인증 / 안전검사 / 자율안전검사기관

(크레인·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고소작업대·곤돌라)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회전속도측정기, 3) 진동측정기, 4) 경도계, 5) 로드셀(5톤 이상), 6) 분동(0.5톤 이상), 7) 초음파두께측정기, 8) 비파괴시험장비(UT, MT), 9) 트랜시트, 10) 표면온도계, 11) 절연저항측정기, 12) 클램프미터, 13) 만능회로시험기, 14) 접지저항측정기, 15) 레이저거리측정기, 16) 수준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1) 초음파두께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프레스·전단기·사출성형기·롤러기·절곡기) 1) 회전속도측정기, 2) 정지성능측정장치, 3) 진동측정기, 4) 경도계, 5) 비파괴시험장비(UT, MT), 6) 표면온도계, 7) 소음측정기, 8) 절연저항측정기, 9) 클램프미터, 10) 만능회로시험기, 10) 접지저항측정기

(압력용기) 1) 수압시험기, 2) 기밀시험장비,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4) 표준압력계, 5) 안전밸브시험기구, 6) 산업용내시경, 7) 금속현미경, 8) 경도계, 9) 핀홀테스터기, 10) 초음파두께측정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산소농도측정기, 13) 가스농도측정기, 14) 표면온도계, 15) 가스누설탐지기, 16) 절연저항측정기, 17) 만능회로시험기

(방폭용전기기계·기구) 1) 폭발시험설비, 2) 수압시험기, 3) 충격시험기, 4) 인유기능시험기, 4) 고속온도기록계, 5) 토크시험장비, 6) 열안전성시험장비, 7) 불꽃점화시험기, 8) 구속시험장비, 9) 살수시험기, 10) 분진시험기, 11) 트래킹시험기, 12) 내부압력시험기, 13) 오실로스코프, 14) 내광시험장비, 15) 정전기시험장비, 16) 내전압시험장비, 17) 절연저항시험장비, 18)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19) 밀봉시험장비, 20) 동압력센서교정장비, 21) 최대실험 안전틈새시험 장비 또는 산소분석계, 22) 휴대용압력계, 23) 휴대용가스농도계, 24) 램프홀더 토크시험기, 25) RLC측정기, 26) 침수누설시험장비, 27) 통기제한시험장비, 28) 접점압력시험장비, 29) 수분함유량측정기, 30) 고무경도계(IRHD)

(가설기자재) 1) 압축변형시험기, 2) 인장시험기, 3) 만능재료시험기, 4) 낙하시험기, 5) 초음파두께측정기, 6) 경도기, 7) 토크렌치, 8) 마이크로미터, 9) 버니어캘리퍼스

(국소배기장치) 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 또는 청음봉, 3) 절연저항측정기, 4) 표면온도계 및 내부 온도측정기, 5) 열선 풍속계, 6) 회전속도측정기, 7) 만능회로시험기, 8) 접지저항측정기, 9) 클램프미터

(종합자율안전검사기관) 1) 회전속도측정기, 2) 비파괴시험장비 (UT, MT, PT), 3) 와이어로프테스터, 4) 표준압력계, 5) 소음측정기, 6) 접지저항측정기, 7) 진동측정기, 8) 절연저항측정기, 9)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0) 프레스급정지성능측정기, 11) 만능회로시험기, 12) 수압시험기, 13) 로드셀 또는 분동, 14) 분진측정기, 15) 풍속계, 16) 피치, 틸트 및 라운드 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17) 수준기, 18) 검사용 공구세트, 19) 라인스피드미터, 20) 가스농도측정기, 21) 기밀시험장비, 22) 안전밸브시험기구, 23) 산업용 내시경, 24) 조도계, 25) 가스탐지기, 26) 초음파 두께측정기, 27) 스모크테스터, 28) 청음기 또는 청음봉, 29)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30)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31) 연소가스분석기, 32) 피토 튜브, 33) 수주 마노미터, 34) 줄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유기용제·특정 화학물질·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檢知管)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연기 측정관: 연기를 발생시켜 기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도구),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유리온도계, 정압 프로브(압력 측정봉)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 작업환경측정기관

1) 화학적 인자·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광전분광광도계, 3)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4)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mg 이하), 5) 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 가능한 것), 6)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7)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 드래프트 체임버 및 화학실험대, 8) 대기의 온도·습도·기류·고열 및 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11)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 플라즈마(ICP), 12)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 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 13) 분석을 할 때에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리를 위한 설비,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설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는 설비(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나) 유리 규산(SiO₂): X-ray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 다) 석면: 위상차현미경 및 석면 분석에 필요한 부속품)

• 특수건강진단기관

1) 시력검사기, 2) 청력검사기(오디오 체커는 제외한다), 3) 현미경, 4)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 5) 항온수조, 6) 원심분리기, 7) 간염검사용 기기, 8) 저울(최소 측정단위 0.01mg 이하), 9)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 10) 엑스선촬영기, 11) 자동 혈구계수기, 12) 자동 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혈액화학검사·신장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기, 13) 폐기능검사기, 14) 냉장고, 15) 원자흡광광도계(시료 속의 금속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 16) 가스크로마토그래프(기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장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기

1 평가 취지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관의 온라인 서비스 구축 및 실행 여부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운영 여부 확인
- 2단계: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필수 사항 반영 여부 확인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련 내용을 공용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 (A)블로그의 경우 개인과 기관의 블로그가 공용으로 운영되는 경우 불인정되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고유의 블로그가 운영될 경우 인정됨
- (Q)네이버 밴드 등 SNS 활동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구축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A)필수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인정됨

세부평가 A.4.1 종합기술지원체계 구축(배점: 1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동일 분야(건) x 2점 + 타 분야(건) x 3점 ·최대 10점	_____점
평가취지		
기관의 제한된 역량 극복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등을 통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준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계약서 및 협약서 등의 관련서류 확인 ○ 평가년도에 기술지도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 등의 결과물 확인		
☐ 판단 기준 ○ 계약 또는 협약 후 종합기술지원 결과물이 없는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에 단순히 실시결과만 기재된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1개의 보고서를 1건으로 산정하고, 1개의 사업장에 반복하여 지원한 경우 실적 1건으로 인정 ○ 인정 기준 ① 동일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된 타 기관 ② 타 분야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외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으로 등록·지정된 기관 ③ 타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업무 관련 기관 인정 ④ 평가 대상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는 제외 ⑤ 종합기술지원 실적은 기관 주관으로 실시한 실적만 인정		
확인사항		
☐ 컨소시엄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의 관련 서류, 시행결과 보고서 등		

1 평가 취지

제한된 역량 극복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등을 통한 기술지도 서비스 실행 여부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컨소시엄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2단계: 평가 대상 기간 합동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 3단계: 합동 실시 기관 명, 참여자, 일시, 대상, 각각의 기술지도 내용 등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 위의 3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주도가 아닌 업무협약 체결기관 주도로 실시한 경우 쌍방 모두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A)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주관으로 실시한 실적만 인정됨
- (Q)합동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A)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단순히 기재된 경우는 불인정되며 별도로 MOU 또는 컨소시엄 기관 관련 기술지도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함.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는 MOU 체결 기관의 참여자와 기술지도 내용, 사진, 서명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세부평가 A.5.1 포상 실적(가점: +2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포상 실적	평가 대상 기간 내 기관 및 전담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20점]	_____점
평가취지		
평가대상기관 또는 지도요원에 대한 포상 실적에 따른 평가		
평가내용		
☐ 평가 기준 ○ 건설안전 관련 분야 포상 훈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최대 +20점)		
·대통령 포상		20점 × 포상 수
·국무총리 포상		15점 × 포상 수
·장관 포상 ·서울특별시장(장관급)		10점 × 포상 수
·공단 이사장 포상 ·고용노동청지청장 ·광역시장·도지사		7점 × 포상 수
·공단 산하기관장(교육원장, 인증원장, 연구원장, 본부장, 지사장) ·지자체장(시·군구) ·민간단체장(건설안전학회에 한함)		3점 × 포상 수
※ 포상에 기재된 기관명이 평가대상 기관명과 다를 경우 불인정 ※ (예시)기관이 국무총리 포상을 받았고, 장관포상을 받은 직원 2명, 공단 이사장 포상을 받은 직원이 1명 있을 경우 ⇒ 총 42점(15점+20점+7점) 이나 상한 20점 부여		
확인사항		
☐ 포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상패, 표창장 사본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관 또는 수행 인력의 포상 실적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평가 대상 기간에 기관 또는 수행 인력의 포상 여부 확인
- 2단계: 훈격별 점수 합산하여 평가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전국 단위 기관인 경우 본사 기관이 표창을 받은 경우 이외 지부 기관이 모두 포상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A)포상은 지정받은 기관 또는 수행 인력에 한해 인정되며, 이외 지부 소속 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 (Q)포상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A)건설안전 관련 분야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됨

세부평가 A.5.2	업무정지 처분 실적(감점: -12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 결과
업무정지 처분 실적	평가 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_____점
평가취지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평가 상 감점 조치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결과를 받아서 평가 ○ 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평가 ☐ 평가 기준 ○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 평가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감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 -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점수: (처분 개월 수) × (-40점) (최대 감점 -120점) ※ (예시)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4개월을 받은 경우 실제 감점은 -160점 (-40점×4개월)이나 최대 감점 점수를 적용하여 -120점 부여 ☐ 지부(출장소)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 ○ 본사 평가 점수 반영	
확인사항	☐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현장 평가 시 확인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확인,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평가 대상 기간에 기관의 행정처분(업무정지) 여부 확인
- 2단계: 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업무정지 처분을 3개월 받았을 경우 확정일이 평가 대상기간 직전 2개월 전일 경우 평가 대상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1개월만 산정되는지?
- (A)업무정지 처분은 처분 확정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기간이 아니더라도 처분 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됨. 즉 처분확정일 기준 명시된 업무정지 기간을 적용함

(-170~+20점)

– 53 –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확인,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평가 대상 기간에 기관의 행정처분(시정조치·경고) 여부 확인
- 2단계: 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전국단위 기관인 경우 본사 기관이 경고를 받은 경우 이외 지부 기관이 모두 경고처분 실적으로 평가되는지?
- (A)행정처분 실적은 지정받은 기관 또는 수행 인력에 한해 인정되며, 이외 지부 소속 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업 무 성 과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30점)

세부평가 B.1.1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의 적정성(배점: 4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의 적정성	배정율 20% 미만	☐ 40
	배정율 20% 이상 30% 미만	☐ 25
	배정율 30% 이상 40% 미만	☐ 10
	배정율 40% 이상	☐ 0
평가취지		
지도사업장 중 규모가 큰 사업장(공사금액 40억 원 이상)에 경험과 기술력이 뛰어난 지도요원 배정을 통한 기술지도 수준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지도사업장별 담당자 현황을 제출받아 인력기준 3호, 4호가 지도한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인 사업장 비율 평가 ○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 사업장을 샘플링하여(최소 10개 사업장 이상) 실제 기술지도 여부 검증		
☐ 평가 산식 $\text{배정률} = \frac{\text{인력기준 3호, 4호가 지도한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 사업장 수}}{\text{지도사업장 중에서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 사업장 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평가 대상 기간에 해지된 사업장 중 3개월 이상 업무 지도한 사업장은 포함 ○ 인력기준 3호, 4호가 지도한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인 사업장 수 - 평가 대상 기간에 1회 이상 3호, 4호 인력이 기술지도를 수행한 경우 3호, 4호 인력이 지도한 사업장으로 분류 ○ 40억 원 이상 공사에서 8회마다 한 번 이상 지도인력기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문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 “0”점 부여		
확인사항		
○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 업무지도 직원명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사업장 중 규모가 큰 사업장(공사금액 40억원 이상)에 대한 기술지도 수준 향상을 위해 경험과 기술력이 뛰어난 지도요원을 배정하는지 여부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평가 대상 기간 중 전체 신고 인력 현황 파악
- 2단계: 기술지도 현장별 수행 인력 배분 및 기술지도 실적 확인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반드시 수행 인력이 법정 신고 인력이어야 함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 ⇒ 지도사 기관은 평가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3 질의회시

- (Q)실제 인력기준은 2호이나 3호 또는 4호 인력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 (A)신고 내역에 관계없이 2호 기준으로 평가됨

업 무 성 과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30점)

세부평가 B.1.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배점: 2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총 점	평가결과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80% 이상	☐ 20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60% 이상 80% 미만	☐ 10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60% 미만	☐ 0
	[가점]기술지도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항목 포함	☐ +5 ☐ +10
평가취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양식 및 내용 표준화를 통해 전반적인 기술지도 수준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술지도 사업장을 샘플링(최소 10개소 이상)하여 결과보고서에 필수 반영사항 작성 여부 확인 - 샘플링 사업장은 지도요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 ※ 샘플링 사업장은 [B.1.9 기술지도 사업장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평가 시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 ☐ 평가 산식 $\text{적정 보고서 비율} = \frac{\text{표준화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text{샘플링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보고서 양식에 필수 반영사항 포함 여부 및 기술지도 내용 작성 여부 확인 - 작성란은 있으나 기술지도 내용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0.5개 인정 ○ 필수 반영 사항 ① 사업장 개요(사업장 및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개시번호), 공사 금액 및 기간) ② 기술지도 개요(공사종류, 공정율, 재해율, 현장책임자, 기술지도 회차 등) ③ 기술지도 방문 시 재해예방 대책 ④ 향후 공종 재해예방 대책 ⑤ 사업장 지원현황 ⑥ 지난 기술지도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필수 반영 사항 외 기술지도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항목이 있을 경우 가점 최대 10점 부여(아래 내용 포함 시 각 5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5점 - 추락사고 예방, 건설장비 안전, 노동부 및 공단 특별점검 사항(붕괴, 폭염, 한파, 질식, 미세먼지 등) 등 기술지도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항목이 있을 경우 5점		
확인사항 ☐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횟수	() 회차 / 총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성함 _____ 서명 _____)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_____)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 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 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 의 급속제 파이프 사용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 하는 주요 진행공정	1.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 진행공정		** 유해·위험요인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업 무 성 과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30점)

세부평가 B.1.3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서명 및 전달의 적정성(배점: 2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서명 및 전달의 적정성	사업장 담당자 서명 등 누락이 없는 경우	☐ 20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이 5% 미만	☐ 10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10% 미만	☐ 5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이 10% 이상	☐ 0
평가취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록 및 사업장 전달 체계 확립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술지도 사업장을 샘플링(최소 10개소 이상)하여 사업장 담당자 및 소장 서명, 기관 담당자·관리자 결재 상태 작성 여부를 확인 - 샘플링 사업장은 지도요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 ○ 기술지도 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및 그 밖에 기술지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 상태 확인		
☐ 평가 산식 $\text{누락율} = \frac{\text{누락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text{샘플링한 사업장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제출일자는 NCR 용지일 경우 보고서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고 기타 이메일, 공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며, 제출일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일자 부적정으로 판단하여 “0점” 처리 ○ 사업장 담당자 확인일자 및 서명, 기관 담당자·관리자 결재 등이 1개 이상 누락된 경우 누락으로 판단 ○ 평가 당일 사업장 방문계획에 따라 방문하는 사업장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는 제외 (단, 평가 완료시점까지 점검 후 복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		
확인사항		
☐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결재(서명) 및 전달, 이행 여부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기술지도 실시 사업장 현황 파악
- 2단계: 최소 10개소 이상 샘플링하여 서명, 전달 상태 확인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B.1.9 지표에서 모니터링하는 현장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질의회시

- (Q)담당자 및 결재권자 서명은 직인으로도 가능한지?
- (A)서명의 기준은 직인이 아닌 서명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나 직인으로도 가능
- (Q)노트북, 태블릿 등 전산으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 전산으로 서명을 받아도 인정되는지?
- (A)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시 해당 항목에 실명으로 서명할 경우 인정 가능

4 서명 관련 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2항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개선의견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공정별 설비·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위험요인, 현재 안전조치, 위험성 추정 및 평가, 개선계획, 담당확인 등)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 무 성 과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30점)

세부평가 B.1.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의 적정성(배점: 10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의 적정성	개선대책이 모두 타당한 경우	☐ 100
	기술적 개선대책 미흡 비율이 5% 미만	☐ 80
	기술적 개선대책 미흡 비율이 5% 이상 10% 미만	☐ 60
	기술적 개선대책 미흡 비율이 10% 이상 15% 미만	☐ 40
	기술적 개선대책 미흡 비율이 15% 이상 20% 미만	☐ 20
	기술적 개선대책 미흡 비율이 20% 이상	☐ 0

평가취지
기술지도 사업장에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현실적인 개선대책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술지도 사업장을 샘플링(최소 10개소 이상)하여 개선대책의 적정성 확인 - 샘플링 사업장은 지도요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 ※ 샘플링 사업장은 [B.1.9 기술지도 사업장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평가 시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 ○ 선정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중 개선대책이 부적정한 개수를 산출하여 평가 ○ 재해발생 사업장의 경우 재해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적정여부 확인
☐ 평가 산식 $\text{기술적개선대책미흡비율} = \frac{\text{기술적개선대책미흡기술지도결과보고서수}}{\text{샘플링한기술지도결과보고서수}} \times 100$
☐ 평가 기준 ① 유해·위험요인 또는 개선대책이 누락된 경우 ② 유해·위험요인 및 기술적 대책이 일반적인 내용일 경우 <부적정 예시> (위험요인) 비계 안전발판 미설치 ⇒ (대책) 비계 안전발판 설치 ③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이 제시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④ 관리적 사항(교육 및 보호구 등)으로만 기재된 경우

확인사항
☐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사업장에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현실적인 개선대책 제시 여부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기술지도 실시 사업장 현황 파악
- 2단계: 최소 10개소 이상 샘플링하여 개선 대책의 적정성 확인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B.1.9 지표에서 모니터링하는 현장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질의회시

- (Q)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 (A)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위험성평가 결과 현재 위험 요인에 대한 파악에 따른 관리적 공학적 대책(4M)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식 적용 가능
 - ※ 일반적 대책 제시는 불인정하며, 기술지도 현장의 해당 공정(또는 공종)에 적합한 대책 제시가 중요

업 무 성 과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30점)

세부평가 B.1.5		향후 공정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의 적정성(배점: 5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향후 공정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의 적정성	재해예방대책이 모두 타당한 경우		☐ 50
	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5% 미만		☐ 40
	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5% 이상 10% 미만		☐ 30
	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10% 이상 15% 미만		☐ 20
	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15% 이상 20% 미만		☐ 10
	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20% 이상		☐ 0
평가취지			
기술지도 후 다음 기술지도 사이 실시예정인 향후 공사에 대하여 타당하고 적합한 재해예방 대책 수립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술지도 사업장을 샘플링(최소 10개사 이상)하여 개선대책의 적정성 확인 - 샘플링 사업장은 지도요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 ※ 샘플링 사업장은 [B.1.9 기술지도 사업장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평가 시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 ○ 선정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중 향후 공정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한 개수를 산출하여 평가			
☐ 평가 산식 $\text{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 = \frac{\text{재해예방대책 미흡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text{샘플링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 \times 100$			
☐ 평가 기준 ① 공정률이 90%미만임에도 향후 재해예방대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② 진행 공정과 무관한 재해예방대책을 명시한 경우 ③ ‘난간대 설치’, ‘교육 실시’ 등 단순 개괄적인 대책만 제시한 경우 ④ 관리적 사항(교육 및 보호구 등)으로만 기재된 경우			
확인사항			
☐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업 무 성 과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30점)

세부평가 B.1.6 기술자료 제공의 적정성(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기술자료 제공의 적정성	기술자료 제공 산정표에 따라 부여된 점수 반영	_____점

평가취지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기술자료 제공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자체 제작한 기술자료 건수(종), 사업장별 배포실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
- 샘플링(최소 10개소)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자료배포 여부를 확인

※ 샘플링 사업장은 [B.1.9 기술지도 사업장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평가 시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

☐ 평가 산식

$$\text{기술자료 제공 비율} = \frac{\text{기술자료제공사업장수(중복 인정)}}{\text{전체기술지도사업장수}} \times 100$$

- 기술자료 건수(종): 증빙자료 및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자료 확인

자체 제작·제공 기술자료 제공 비율	1종 이하	2종	3종	4종 이상
사업장 80% 이상	15	20	25	30
사업장 60% 이상 80% 미만	10	15	20	25
사업장 40% 이상 60% 미만	5	10	15	20
사업장 40% 미만	3	5	10	15

☐ 평가 기준

- ① 기술자료는 책자, 포스터, OPL, 현수막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이어야 함
(책자는 구성 내용에 따라 2종으로 인정 가능, 인쇄 또는 E-mail 배포 제외)
- ② 인쇄업체를 통해 제작한 것을 원칙적으로 실적으로 인정(세금계산서 확인 등)
※ 단, 기관 내부적으로 제작한 자료의 경우 50% 인정(책자 또는 바인더 형태 인정)
- ③ 동영상 등을 USB, File, 기타 전자 형태로 자체 제작·배포한 경우 인정
- ④ 고용노동부·공단에서 제공한 기술자료를 배포한 경우 실적 50% 인정
- 단, 명확히 제공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보고서에 위탁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맞는 기술자료를 공단 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배송 받도록 구체적인 방법 안내 및 확인 실적 포함
- ⑤ 실적이 없는 기관은 '0점' 부여
- ⑥ 기술자료 제공현황(배포대장)과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샘플링 확인하여 10% 이상 불일치한 경우 산정표 점수의 50% 부여

확인사항

- ☐ 자체 제작한 기술자료 샘플, 자료배포대장,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기술자료 제공 여부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기술지도 실시 사업장 현황 파악(배포율 확인)
- 2단계: 최소 10개소 이상 샘플링하여 자료 배포 여부 확인
- 3단계: 기술자료 배포 대장과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재 사항 일치 여부 확인
 - ⇒ 위의 3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B.1.9 지표에서 모니터링하는 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질의회시

- (Q)기술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 (A)기술자료를 기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경우 책자, 바인더에 한해 산정표의 50%를 인정
- (Q)프린트물, 이메일 발송 자료의 경우도 인정되는지?
- (A)프린트물, 이메일 발송 자료의 경우 불인정
- (Q)평가 대상 기간 전년도에 제작하여 남은 자료를 배포해도 인정되는지?
- (A)평가 대상 기간 내에 제작한 기술자료에 한하여 인정됨

업 무 성 과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30점)

세부평가 B.1.7 교육지원 횟수의 적정성(배점: 2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교육지원 횟수의 적정성	교육실시 비율 50% 이상	☐ 20
	교육실시 비율 30% 이상 50% 미만	☐ 15
	교육실시 비율 10% 이상 30% 미만	☐ 10
	교육실시 비율 10% 미만	☐ 5
	교육지원 건수가 없는 경우	☐ 0
평가취지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 지원으로 재해예방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대상기관에 사전에 사업장 현장별 교육실적을 제출받아 확인 ○ 교육 실시 기술지도 사업장을 샘플링(최소 10개소)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확인 - 샘플링 사업장은 지도요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 ※ 샘플링 사업장은 [B.1.9 기술지도 사업장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평가 시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 ☐ 평가 산식 $\text{교육실시 비율} = \frac{\text{교육지원 횟수}}{\text{전체 지도사업장의 기술지도 횟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K2B 전산시스템과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모두 실적을 기입한 경우 인정 - 단위 공종,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교육 인정 - ‘교육실시’ 등과 같은 단순 메모는 불인정, 반드시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 교육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샘플링 결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교육결과 보고서 또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서명, 사진 등 확인 확인사항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교육지원 계획, 교육지원 실적 등		

업 무 성 과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30점)

세부평가 B.1.8	장비 활용의 적정성(배점: 4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장비 활용실적	장비 활용실적 산정표에 따라 점수 부여			점																				
평가취지																								
다양한 장비활용을 통한 기술지도 수준 및 사업장의 이해도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지도한 사업장 수(개소) 및 장비의 수(종)를 확인 ○ 장비활용 기술지도 현장(최소 10개소)을 샘플링 하여 장비사용대장과 법정 및 추가 장비 사용 실적 확인 - 샘플링 사업장은 지도요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 - 단, 장비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소 10개 현장을 선정하여 평가 ※ 샘플링 사업장은 [B.1.9 기술지도 사업장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평가 시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																								
☐ 평가 산식(장비 활용 실적표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 border="1"> <thead> <tr> <th>활용 장비 수 활용 지도사업장 비율</th> <th>2종 미만</th> <th>2종 이상 3종 미만</th> <th>3종 이상 4종 미만</th> <th>4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기술지도 사업장의 50% 이상</td> <td>10</td> <td>20</td> <td>30</td> <td>40</td> </tr> <tr> <td>기술지도 사업장의 30% 이상, 50% 미만</td> <td>5</td> <td>10</td> <td>20</td> <td>30</td> </tr> <tr> <td>기술지도 사업장의 30% 미만</td> <td>0</td> <td>5</td> <td>10</td> <td>20</td> </tr> </tbody> </table> - 활용 장비 수: 샘플링 사업장에서 활용한 장비 수					활용 장비 수 활용 지도사업장 비율	2종 미만	2종 이상 3종 미만	3종 이상 4종 미만	4종 이상	기술지도 사업장의 50% 이상	10	20	30	40	기술지도 사업장의 30% 이상, 50% 미만	5	10	20	30	기술지도 사업장의 30% 미만	0	5	10	20
활용 장비 수 활용 지도사업장 비율	2종 미만	2종 이상 3종 미만	3종 이상 4종 미만	4종 이상																				
기술지도 사업장의 50% 이상	10	20	30	40																				
기술지도 사업장의 30% 이상, 50% 미만	5	10	20	30																				
기술지도 사업장의 30% 미만	0	5	10	20																				
※ 장비사용대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산식 사용 $\text{활용 지도사업장비율} = \frac{\text{장비 활용사업장수}}{\text{샘플링사업장수(최소10개)}} \times 100$																								
☐ 평가 기준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 <table border="1"> <tr> <td>① 측정 장소 ② 측정기준 ③ 측정값</td> </tr> <tr> <td>④ 기술지도 내용(적합여부, 부적합 시 개선대책 명시)</td> </tr> </table> ※ 4가지 사항이 모두 보고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활용실적으로 인정 ○ 장비사용대장과 샘플링 결과가 20% 이상 불일치 할 경우 10점 감점					① 측정 장소 ② 측정기준 ③ 측정값	④ 기술지도 내용(적합여부, 부적합 시 개선대책 명시)																		
① 측정 장소 ② 측정기준 ③ 측정값																								
④ 기술지도 내용(적합여부, 부적합 시 개선대책 명시)																								
확인사항																								
☐ 장비사용대장,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1 평가 취지

기술지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비 활용을 통한 기술지도의 신뢰성 향상 노력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지도한 현장 수(개소) 및 장비 수(종) 확인
- 2단계: 최소 10개소 이상 샘플링하여 법정 및 추가장비 사용 실적 확인
- 3단계: 장비 사용 대장과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재 사항 일치 여부 확인
 - ⇒ 위의 3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B.1.2 ~ B.1.8의 지표에서 샘플링 하는 현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질의회시

- (Q)법정 장비 이외 장비도 활용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A)법정 장비 이외 추가 장비도 인정되나, 자 등 단순 측정장비는 불인정
- (Q)장비 활용 실적은 필수 사항을 모두 기재 해야만 인정되는지?
- (A)측정 장소, 측정 기준, 측정값, 기술지도 내용 4가지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만 활용 실적으로 인정됨

업 무 성 과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30점)

세부평가 B.1.9 기술지도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배점: -5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기술지도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기술지도 건수 x (- 5 점) [최대 - 50점]	
평가취지		
기술지도 사업장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여부를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기술지도 사업장 중 2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현장 확인 - 방문현장은 기관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및 미만에서 각 1개소를 우선 선정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대상 조정 가능 - 우선 선정 대상 공사현장이 없거나 2개 현장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평가 반에서 현장 수 조정 가능 [방문현장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재해 발생사업장 (평가 대상기간 공단 재해통계 발생기준) - 2순위: 평가 시점에서 공정률 40% 이상 80% 미만 ○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현재 공정, 건설기계 등을 파악하고 유해·위험 요인 및 개선 여부를 평가		
☐ 평가 산식 ○ 평가결과: (미흡한 기술지도 건수) x (-5 점) (최대 -50점)		
☐ 판단 기준 ① 사업장 및 기술지도 개요가 현장과 불일치할 경우 ②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과 현장 공정이 불일치할 경우 ③ 기술지도 회차별 재해예방대책(향후 공종 포함) 기술지도 내용 및 이행이 미흡한 경우 ④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이 미흡한 경우 ⑤ 현장에서 보관 중인 보고서와 K2B에 등록된 보고서가 불일치할 경우 등		
확인사항		
☐ 기술지도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사업장관리카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 평가 취지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6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기술지도 사업장의 현장 작동성 여부 평가

2 평가 방법

- 1단계: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방문 현장 2개소 이상 선정(피 평가 기관과 협의)
- 2단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인 및 개선 여부 평가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B.1.2 ~ B.1.8의 지표에서 샘플링 하는 현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질의회시

- (Q)현장 모니터링 예정 현장의 경우 사전 공지하는지?
- (A)공고 후 평가반별로 지도기관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협의하여 최종 2개소 이상 선정, 평가

업 무 성 과

B.2 재해 감소 성과

(150점)

세부평가 B.2.1 사고사망재해 발생빈도 감소성과(배점: 12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사고사망재해 발생빈도 감소 성과	사고사망재해 미발생	☐ 120
	기술지도 1만회당 사고사망 발생비율 0.5 미만	☐ 80
	기술지도 1만회당 사고사망 발생비율 0.5 이상 1.0 미만	☐ 60
	기술지도 1만회당 사고사망 발생비율 1.0 이상 1.5 미만	☐ 40
	기술지도 1만회당 사고사망 발생비율 1.5 이상 2.0 미만	☐ 20
	평가 산식에 따른 사고사망자 발생빈도가 2.0 이상	☐ 0
평가취지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사고사망자 감소 노력을 기술지도 횟수 대비 사고사망자 발생 빈도를 산출하여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기간 내 기관의 기술지도 1만 회당 사고사망자 발생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 산식 $\text{기술지도1만회당사고사망발생비율} = \frac{\text{기술지도사업장의사고사망자수}}{\text{전체기술지도횟수}} \times 10^4$ ☐ 평가 기준 ○ 기술지도 1만회 기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점 부여 ☞ '23년 평가 대상 기간('22. 10. 1. ~ '23. 9. 30.)에 대하여 산정해 방문 평가 후 반영 ○ 사고사망자: 평가 대상 기간에 승인된 업무상 사고사망자의 수 ○ 아래 기준에 해당할시 제외 ①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② 사고사망 중 기술지도 계약 기간 외에 발생한 사고 ③ '22년 평가에 반영된 사고사망 ○ K2B 전산 입력 자료로 평가하되 전산 미 입력, 자료 오류 등으로 사망자 누락이 확인될 경우 전체 사망자수를 반영한 점수에서 누락된 사망자수 만큼 단계 하향		
확인사항 ☐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 공식(잠정)통계 DB 등		

업 무 성 과

B.2 재해 감소 성과

(150점)

세부평가 B.2.2		업무상 사고재해율 감소 성과(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업무상 재해율 감소 성과	업무상 사고재해율에 따른 점수				_____점												
평가취지																	
기술지도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기간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을 제출받아 사전 평가 ○ 평가 대상 기간의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기술지도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을 평가 ☞ '23년 평가 대상 기간('22. 10. 1. ~ '23. 9. 30.)에 대해 기관별 재해율 산정하여 방문 평가 후 반영																	
☐ 평가 기준 ○ 업무상 사고: 평가 대상 기간에 승인된 업무상 사고부상자의 수(발생일 기준) ○ 기술지도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에 따라 점수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업무상 재해율</td> <td>0.75% 미만</td> <td>0.75% 이상 1.0% 미만</td> <td>1.0% 이상 1.5% 미만</td> <td>1.5% 이상 2.0% 미만</td> <td>2.0% 이상</td> </tr> <tr> <td>득 점</td> <td>30점</td> <td>20점</td> <td>10점</td> <td>5점</td> <td>0점</td> </tr> </table> ○ 업무상 사고재해율 산식 $\text{업무상사고재해율} = \frac{\text{기술지도사업장의 공식(잠정) 재해자수 합계}}{\text{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기준기술지도사업장근로자수 합계}} \times 100$ - K2B 입력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산재번호 오류율(근로자 0명인 자료 포함)이 입력 자료의 20%를 초과할 경우 "0점" 처리 ○ 적용제외 ①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재해 ② 기술지도 계약 기간 외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재해율	0.75% 미만	0.7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득 점	30점	20점	10점	5점	0점
업무상 재해율	0.75% 미만	0.7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득 점	30점	20점	10점	5점	0점												
확인사항																	
☐ 수행사업장 현황, 공식(잠정)통계 DB 등																	

세부평가 B.3.1 기술지도 사업장 만족도(배점: 4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기술지도 사업장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 95점 이상	☐ 40
	만족도 조사결과 90점 이상 95점 미만	☐ 30
	만족도 조사결과 85점 이상 90점 미만	☐ 20
	만족도 조사결과 80점 이상 85점 미만	☐ 10
	만족도 조사결과 80점 미만	☐ 5
	민원이 접수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 0
평가취지		
기술지도 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장 만족도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기관의 평가년도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을 제출받아 평가 ○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 고용노동부 및 공단 기관 관련 민원 건수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기준 ○ 외부 리서치 기관 의뢰 결과 만족도 점수에 따라 평가 ○ 고용노동부 및 공단에 접수된 민원 발생 건수에 따라 평가		
☐ 판단 기준 ① 조사된 모수가 30개 미만 또는 성공 조사건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 기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전체 평균점수를 초과한 경우 평균점수에서 한 단계 상향 평가 - 기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전체 평균점수 이하인 경우 평균점수에서 한 단계 하향 평가 ② 위탁 실적은 있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는 “20”점으로 평가 ③ 기술지도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노동부 또는 공단에 진정서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확인사항		
☐ 외부 리서치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민원 결과		

업 무 성 과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120점)

세부평가 B.3.2	안전 활동 우수사례(배점: 4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안전 활동 우수사례	평가 산식에 따른 점수 부여	_____점
평가취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기간에 실시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실행 건수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산식(우수사례(활동) 실적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 ○ 평가점수 = 우수사례(활동) 실행 건수 x 8점(최대 40점) ☐ 평가 기준 ①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보급한 실적(1종별 1건) ②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캠페인 실적(1회 0.5건, 최대 4회) ③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캠페인 참여(1회별 1건, 최대 2회) ④ 고위험 작업공종 또는 직종 등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집체교육 실시(1회 0.5건) ⑤ 기관 주관으로 안전관련 신문기고 등 언론매체 홍보 실적(1회 0.5건) ⑥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기관 주관으로 안전관련 현수막 게시(1회 0.25건) ⑦ 지자체, 지역, 공단 등에 안전관련 자문위원으로 위촉(1명당 1건) ⑧ 안전보건강조주간 등 안전관련 세미나 발표 건수가 있는 경우(1회 0.5건) ⑨ 건설안전 관련 고용노동부 및 공단 정책회의(본부 회의에 한함) 참여(1회 1건) ⑩ 기타 건설안전 관련 행사 주체 또는 참여 등(1회 0.5건, 최대 2회) ※ 주체 기관의 공식 결과보고서에 참여자로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계획 및 결과에 예산, 대상, 일정, 내용, 사진(결과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		
확인사항		
☐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증빙서류, 우수사례 활동 보고서 등		

업 무 성 과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120점)

세부평가 B.3.3	기술지도 우수사례(배점: 4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기술지도 우수사례	기술지도 우수사례 심사결과에 따른 점수	_____점
평가취지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기술지도 우수 사례 공유 및 전파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지도기관별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 평가 실시 - 심사자료: 기술지도 우수사례 (기관 자체 작성) ※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도 공지 - 작성내용: 기술지도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등 ☐ 평가 기준 ○ 내·외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점수 부여 - 심사기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감소 노력, 기술지도 수준 향상 노력, 안전 활동 수준, 자체 안전활동 등 - 득점기준: 심사위원회 결과를 4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우수사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확인사항		
☐ 기술지도 우수사례 제출 자료 등		

업 무 성 과

B.4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160점 ~ +100점)

세부평가 B.4.1	산재 은폐 및 보고 지연(감점: -10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산재 은폐 및 보고 지연	산업재해 은폐 및 보고 지연 건수 x -10점	_____점
평가취지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업재해 은폐 및 보고 지연 현황에 대하여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K2B 전산입력현황 기준으로 평가 ○ 평가 대상 기간 산업재해 은폐 및 보고 지연이 확인된 건수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산식 평가점수 = 산업재해미보고및지연보고건수 × (-10) ※ 최대 -100점 ☐ 평가 기준 ○ 산업재해 은폐 건수: 산안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를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미·허위보고 등으로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경고, 권고 등을 받은 건수 ○ 기술지도 계약 전 또는 계약 해지 후 발생한 건수는 제외 (계약 해지된 사업장 중 3개월 이상 업무를 지도한 사업장은 포함)		
확인사항 ☐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 산업재해 은폐 행정처분 내용 등		

업 무 성 과

B.4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160점 ~ +100점)

세부평가 B.4.2 감독기관 신고 연계(가점: +4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감독기관 신고 연계	(건설현장 안전조치 불량 및 급박한 위험요인 등 신고 건수) x (4점) [최대 40점]	_____점
평가취지		
안전조치 불량 및 급박한 위험요인 등을 신고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감독기관신고 연계: 평가 대상 기간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 평가 산식 $\text{평가점수} = \text{감독기관신고건수} \times 4$ ※ 최대 40점		
☐ 평가 기준 ○ 평가 대상기관의 소속 지부(회)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 신고 대상: 급박한 위험요인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 급박한 위험요인 -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추락, 낙하물, 산소결핍, 질식, 중독 우려가 있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 화재 및 폭발 독성가스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구조물 노후 등으로 인해 붕괴, 도괴 위험이 있는 경우 ○ 공단에 신고한 실적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사업장에 한함 ○ 공단에서 사전 평가 후 기관 방문 시 실적을 확인하여 점수 확정		
확인사항		
○ 시정조치, 경고 처분 증빙자료 등		

업 무 성 과

B.4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160점 ~ +100점)

세부평가 B.4.3	재정지원사업 연계(가점: +4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재정지원사업 연계	(재정지원사업 연계 건수) x (2점) [최대 40점]	_____점
평가취지		
재정지원사업 연계실적에 대하여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기간에 기술지도를 실시한 사업장과 보조금 지급완료된 재정지원사업장을 비교하여 평가 ※ 평가 인정 사업은 공단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기존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사업 외 재정지원 사업을 폭넓게 인정 - ex)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로더,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 등), 안전 투자 혁신사업(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등 ○ 기관의 재정지원사업 연계 현황을 제출받아 공단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하고, 기관에서 누락한 연계 현황은 평가 미반영		
☐ 평가 산식 평가점수 = 재정지원사업연계건수 × 2		
※ 최대 40점		
☐ 평가 기준 ○ 평가 대상기관의 소속 지부(회)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 연계 대상: 기관의 기술지도 사업장 중 공단 재정지원사업 <u>지급 완료된 사업장</u> ○ 공단에서 사전 평가 후 기관 방문 시 실적을 확인하여 점수 확정		
확인사항		
○ 재정지원설비 설치완료 확인서 등		

업 무 성 과

B.4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160점 ~ +100점)

세부평가 B.4.4		기술지도 실적 전산입력 오류 (가감점: -60점 ~ +2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기술지도 실적 전산입력 오류	K2B 입력오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60
	K2B 입력오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50
	K2B 입력오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40
	K2B 입력오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 -20
	K2B 입력오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 0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 여부	기한 내에 자체평가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 +10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거나 미작성·미등록한 경우		☐ 0
자체평가의 적정성	자체평가 및 평가 결과 총점 오차가 30점 미만인 경우		☐ +10
	자체평가 및 평가 결과 총점 오차가 30점 이상 50점 미만		☐ +5
	자체평가 및 평가 결과 총점 오차가 50점 이상		☐ 0
평가취지			
K2B의 정확한 전산 입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기간 내 기관 K2B 입력현황 기준으로 평가			
☐ 평가 산식 $\text{입력오류비율} = \frac{\text{K2B입력오류사업장수}}{\text{평가대상기간전체사업장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평가 대상기관의 지부(회) 및 출장소 실적 통합평가 ○ K2B 전산시스템 입력오류 - 임의산재번호를 정식산재번호로 미 변경(단, 정식산재번호로 변경할 수 없는 사유의 증빙서류를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후 승인한 경우에는 입력오류에서 제외처리) - 지도일자 및 사업장정보 입력오류 등 ○ 전산입력시스템(K2B)과 관련으로 고용노동부 처분을 받거나, 기술지도 실시 결과 입력 누락이 확인된 경우 '-60점' 적용 ○ 자체평가보고서 등록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K2B 제출기한 내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작성양식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만 기재한 경우 불인정) ○ 자체평가보고서 오차 점수는 기관 자체평가와 공단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오차를 확인하여 평가(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점수의 합산점수 산출)			
확인사항			
☐ 기술지도 사업장 K2B 입력자료, 자체평가보고서 등록 자료			

1 평가 취지

산안법 시행령 별표 18(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에 따라 K2B 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입력 및 관리 상태와 동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에 따라 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평가 방법

[K2B 전산관리의 적정성]

- 1단계: 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K2B 입력 오류 여부 확인
- 2단계: 입력 오류 산출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 평가 산식에 반영

[자체평가보고서 등록 여부]

- 1단계: 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등록 여부를 K2B에서 확인
- 2단계: 평가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자체평가의 적정성]

- 1단계: 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등록 여부를 K2B에서 확인
- 2단계: 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결과와 비교해 오차 점수 확인
 - ⇒ 위의 2단계를 거쳐 확인 후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
 -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3 질의회시

- (Q)K2B 입력 오류의 기준은 무엇인지?
- (A)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입력 기한 초과, 임의산재번호를 정식산재번호로 미 변경, 기술지도 일자 및 사업장 정보 입력 오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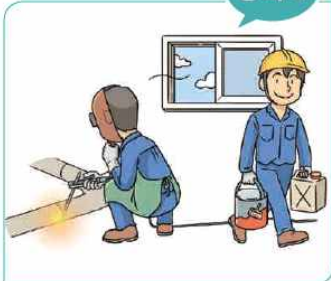
업 무 성 과

B.4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160점 ~ +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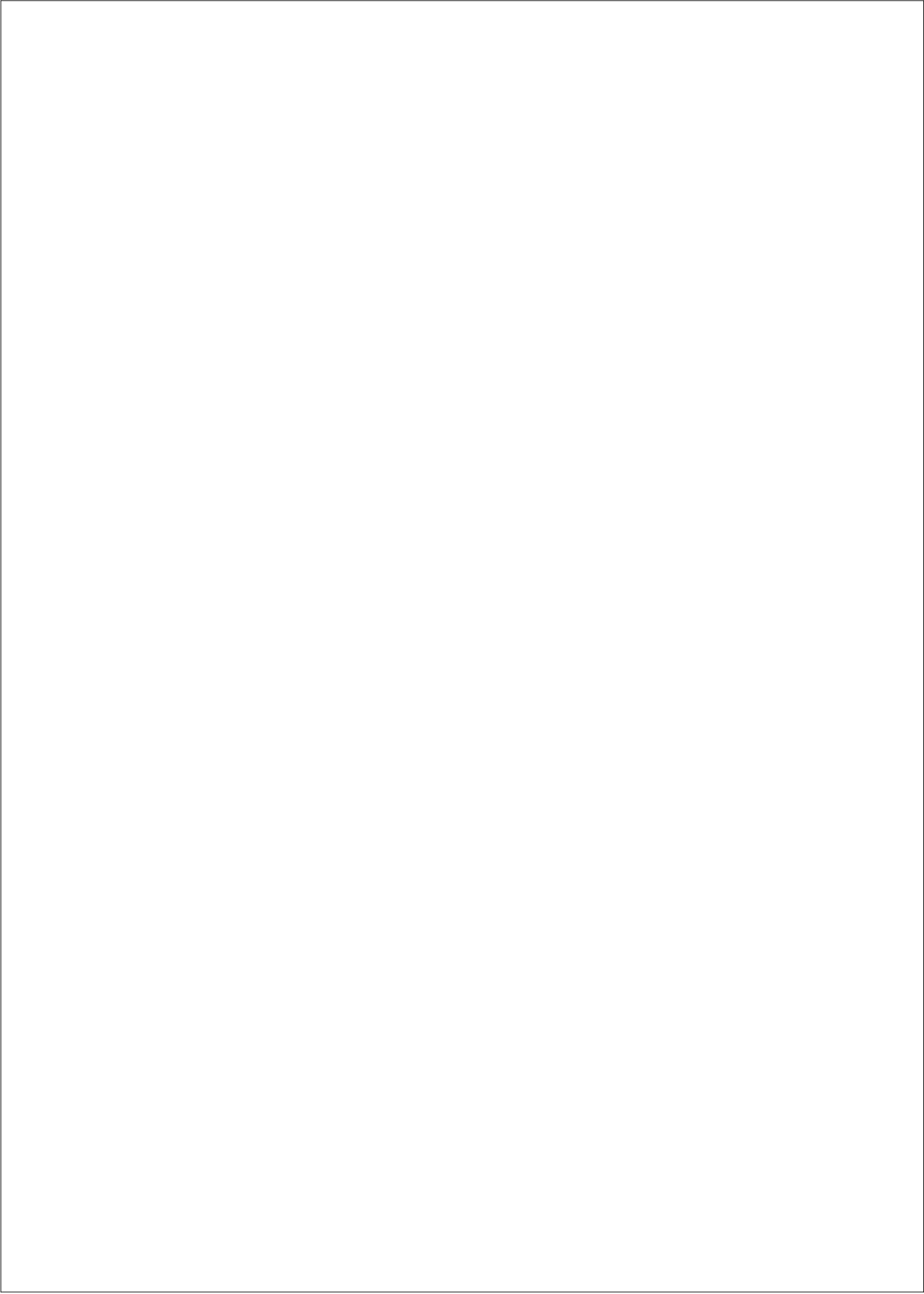
세부평가 B.4.5		화재·폭발사고 등 대형사고 예방 노력(가점: +2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 점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 노력	평가 산식에 따른 지도건수가 50% 이상	☐	+20
	평가 산식에 따른 지도건수가 30% 이상 50% 미만	☐	+15
	평가 산식에 따른 지도건수가 10% 이상 30% 미만	☐	+10
	평가 산식에 따른 지도건수가 10% 미만	☐	+5
	화재·폭발예방 지도 건수가 없는 경우	☐	0
평가취지			
기술지도 사업장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사전에 전체 기술지도 사업장의 실적을 제출받아 확인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서식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거나 기술지도 내용 유무를 확인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샘플링(최소 10개소)하여 기술지도 실시 및 평균 지도건수 확인			
☐ 평가 산식 $\text{화재·폭발예방지도비율} = \frac{\text{화재·폭발적용기술지도 결과보고서수}}{\text{샘플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수}} \times 100$			
☐ 평가 기준 ① 화재감시자의 배치 여부 ② 안전작업 허가서(화기·밀폐공간·활선작업·고소작업 등) 허가서 발급 여부 ③ 건축물 내·외부 작업 시 복합적 위험요인에 대형사고 예방조치(용접 작업 등) 여부 (예시) 위험물질 사용 작업(도장작업 등)과 화기작업의 동시 작업 지도, 화기 사용 장소에서 가연성 자재 분리 보관 지도, 혼합공정에서 작업 시기 내용에 따른 조치 ④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에 준하는 기술지도 사항			
※ 소화기의 이상 유무 확인, 소화기 비치 등과 같은 단순 소방관련 지도사항은 제외			
확인사항			
☐ K2B에 등록된 사업장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 주요 점검 사항

항목 1	항목 2	항목 3
		
환기·가연물 제거	불티비산 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 실시 • 용접·용단 작업 전 가연성 물질, 인화성·폭발성 위험물 제거·격리	• 용접불티 비산에 따른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치 및 사용	•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 지정 및 배치

2 주요 사고 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배관라인 용접작업 중 우레탄 폼에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 발생	블록 내부 취부·용접작업 준비 중 화재·폭발	지하저수조에서 용접 중 방수제 유기용제 폭발
LPG·산소를 사용하여 천장 에어컨 배관라인 용접작업 중 불꽃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발화되어 연기 등에 의해 질식 사망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블록내부 취부·용접 작업을 위해 장소로 이동 중 내부에 체류된 에틸렌가스 폭발로 사망	지하저수조 내부 방수제 도포 후 저수조 통행용 스테인리스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지지용 앵커 볼트를 가용접하던 중 폭발하여 사망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편람

발행일: 2023년 10월

발행인: 안중주

발행처: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평가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성안동)

Tel: 052-703-0500

Fax: 052-703-0300

<비매품>

2023-안전보건평가실-507